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정책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홍보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그 채용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고용노동부의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취업지원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00명(8급 30명, 9급 70명) 중 10명(8급 3명, 9급 7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하고, 90명(8급 27명, 9급 63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452명(6급 136명, 7급 226명, 8급 90명) 및 산업안전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13명(6급 34명, 7급 57명, 8급 22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취업지원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40명(7급 10명, 8급 15명, 9급 15명) 중 20명(7급 5명, 8급 7명, 9급 8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하며, 구직자 취업지원 및 관련 심사·재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감축하고,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증원한 한시정원 540명(5급 4명, 6급 40명, 7급 221명, 8급 158명, 9급 117명) 중 184명(5급 2명, 6급 13명, 7급 75명, 8급 54명, 9급 40명)은 감축하고, 356명(5급 2명, 6급 27명, 7급 146명, 8급 104명, 9급 77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에 증원한 한시정원 6명(6급 2명, 7급 4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1명, 7급 2명),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62명(6급 14명, 7급 20명, 8급 13명, 9급 15명)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의 정원 3명(6급 2명, 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고용지원정책관, 통합고용정책국 공정채용기반과 및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고, 고용노동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산

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산재예방지원과,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및 중대산업재해감독과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3개 건설산재지도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며,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명(5급 1명),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취업지원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0명(7급 5명, 8급 8명, 9급 7명),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88명(6급 116명, 7급 194명, 8급 78명), 산업안전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53명(6급 90명, 7급 134명, 8급 29명),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0명(6급 3명, 7급 12명, 8급 10명, 9급 5명) 및 고용센터 초기상담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2명(7급 14명, 8급 8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고,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의 정원 1명(7급 1명)을 감축하며,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55호, 2023. 1. 3 공포, 2023. 7. 1. 시행)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214호, 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 명칭 변경 사항을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반영하고,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홍보기획팀을 폐지하면서, 고용노동부 하부조직의 기능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2. 14. ~ 12.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홍보기획팀장·디지털소통팀장”을 “홍보담당관·디지털소통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홍보기획팀장·디지털소통팀장”을 “홍보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홍보기획팀장”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1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통상협상”을 “고용노동분야와 관련된 통상, 서비스 등의 협상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 협상”을 “(WTO) 등 다자간 무역 관련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용노동분야 국제협력 정책의 총괄·조정 및 종합계획 수립·시행
11. 고용노동분야 관련 해외주재 공무원에 대한 업무 지원

제3조의2제13항제20호 중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외 국인력 지원 부서 및”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따른 국가간 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의2제15항제1호 중 “국가 간 고용노동교류 및 협력업무의”를 “개발도상국과의 국제개발협력 업무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항”을 “사항(단, ILO 및 UN 관련 제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7호) 중 “독일 또는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사우디아라비아”로 한다.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 세계은행(IBRD) 고용노동분야 회의 참석·대응 및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5. 과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제6조의2제10항에 제13호의3부터 제13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3. 청년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13의4. 청년의 해외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 전산망 등 인프라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3의5. 직업진로지도 및 직업정보제공 등의 개발·확산 및 홍보·교육

13의6. 청년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의 발굴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의2제1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취약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및 노동시장 진입 촉진에 대한 정책 수립·운영

3. 취약청년 발굴 및 구직단념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 일경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운영

5. 청년의 직무탐색, 직무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7. 청년 일경험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운영

8. 기업 주도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 확산에 관한 사항

제14조제3항에 제2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의2. 「고용보험법」 제5장부터 제5장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등에 대한 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

제14조의2 단서 중 “경기지청장·강원지청장·창원지청장”을 “경기지청장·강원지청장”으로 한다.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

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2024년 2월 29일”을 “2026년 2월 29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대구지방 고용노동청의 위치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동구·수성구·북구·군위군, 경상북도 영천시·경산시·청도군

별표 1 제2호의 전주지청의 위치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호 익산지청의 위치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호 군산지청의 위치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전주지청의 위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별표 2 제2호의 익산지청의 위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별표 2 제2호의 군산지청의 위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별표 3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소속 지청 및 출장소란 중 “광주광역시 · 전라북도 · 전라남도”를 “광주광역시 · 전북특별자치도 · 전라남도”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629”를 “622”로 하고, 별정직 계 “5”를 “4”로 하며, “청년정책 담당(6급 상당) 1”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622”를 “616”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5”를 “36”으로 하고,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0”을 “9”로 하며, 행정사무관 “118”을 “11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7”을 “46”으로 하며, 행정주사 · 공업주사 · 보건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7”을 “6”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62”를 “61”로 하며,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직업상담주사보 ·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6”을 “35”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646”을 “639”로 하고, 별정직 계 “5”를 “4”로 하며, “청년정책 담당(6급 상당) 1”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639”를 “633”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5”를 “36”으로 하고,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0”을 “9”로 하며, 행정사무관 “138”을 “13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7”을 “46”으로 하며, 행정주사 · 공업주사 · 보건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7”을 “6”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55”를 “54”로 하며, 행정주사보 · 통계

주사보·직업상담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7”을 “36”으로 한다.

별표 6의3 중 총계 “646”을 “639”로 하고, 별정직 계 “5”를 “4”로 하며, “청년정책 담당(6급 상당) 1”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639”를 “633”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6”을 “37”로 하고,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0”을 “9”로 하며, 행정사무관 “138”을 “13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7”을 “46”으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7”을 “6”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55”를 “54”로 하며,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직업상담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7”을 “36”으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6,746”을 각각 “6,654”로 하고, 행정주사 “967”을 “959”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165”를 “161”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41”을 “239”로 하며, 행정주사보 “1,115”를 “1,104”로 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440”을 “435”로 하며, 직업상담주사보 “36”을 “31”로 한다.

별표 10 중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25”를 “321”로 하고, 행정서기 “399”를 “394”로 하며,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682”를 “671”로 하고, 직업상담서기 “239”를 “23

2”로 하며, 행정서기보 “112”를 “111”로 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870”을 “841”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6,736”을 각각 “6,644”로 하고, 행정주사 “849”를 “841”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165”를 “161”로 하고, 행정주사 · 공업주사 · 보건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39”를 “237”로 하며, 행정주사보 “1,014”를 “1,003”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480”을 “475”로 하며, 직업상담주사보 “36”을 “31”로 한다.

별표 11 중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28”을 “324”로 하고, 행정서기 “497”을 “492”로 하며,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642”를 “631”로 하고, 직업상담서기 “229”를 “222”로 하며, 행정서기보 “204”를 “203”으로 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870”을 “841”로 한다.

별표 11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6,736”을 각각 “6,644”로 하고, 행정주사 “819”를 “811”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165”를 “161”로 하고, 행정주사 · 공업주사 · 보건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39”를 “237”로 하며, 행정주사보 “1,014”를 “1,003”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480”을 “475”로 하며, 직업상담주사보 “36”을 “31”로 한다.

별표 11의2 중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28”을 “324”로 하고, 행정서기 “497”을 “492”로 하며, 행정

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642”를 “631”로 하고, 직업상담서기 “229”를 “222”로 하며, 행정서기보 “204”를 “203”으로 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870”을 “841”로 한다.

별표 12 및 별표 1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7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61”을 각각 “60”으로 하고, 5급 이하 “60”을 “59”로 한다.

별표 1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0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8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총계	1
일반직 계	1
전산주사	1

4. 제28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총계	356
일반직 계	356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27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146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104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77

10. 제28조제1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2월 29일까지)

총계	6
일반직 계	6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

고용노동부령 제9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고용노동부령 제17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23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29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제366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항 중 “홍보기획팀장 및 고객지원팀장은”을 “고객지원팀장은”으로 하고, 제2항 중 “홍보기획팀장 및 고객지원팀장이 대변인 및 감사관을”을 “고객지원팀장이 감사관을”으로 하며, “홍보기획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대변인이, 고객지원팀장이”를 “고객지원팀장이”로 하고, “감사담당관이 각각 분장한다.”를 “감사담당관이 분장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1의 “군위군”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별표1, 별표2, 별표3의 “전북특별자치도” 개정규정: 2024년 1월 18일
3. 별표6, 별표11: 2024년 1월 1일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노동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1명, 7급 2명),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62명(6급 14명, 7급 20명, 8급 13명, 9급 15명)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의 정원 3명(6급 2명, 관리운영직 1명),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의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2]

노동위원회 사무처와 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3항 본문 관련)

구 분	계	중앙노동 위원회	지방노동 위원회
총계	359	90	269
정무직 계	1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	1	1	
일반직 계	358	89	269
고위공무원단	1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위원장)	12		1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8	2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1
서기관	7	1	6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	4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2	
행정사무관	49	28	21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 산사무관	3	2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1	

행정주사	133	26	107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1	
행정주사보	83	11	72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1	
행정서기	20	3	17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	1	
운전서기	1	1	
행정서기보	3		3
방호서기보	2		2
운전서기보	12	1	11
기록연구사	1	1	
사무운영서기보	12	2	10

[별표 13]

노동위원회 사무처와 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3항 단서 관련)

구 분	계	중앙노동 위원회	지방노동 위원회
총계	363	94	269
정무직 계	1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	1	1	
일반직 계	362	93	269
고위공무원단	1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위원장)	12		1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8	2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1
서기관	7	1	6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	4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2	
행정사무관	49	28	21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 산사무관	3	2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1	
행정주사	134	28	106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1	
행정주사보	82	11	71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1	
행정서기	24	4	20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	1	
운전서기	1	1	
행정서기보	5	1	4
방호서기보	2		2
운전서기보	12	1	11
기록연구사	1	1	
사무운영서기보	10	2	8

[별표 18]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26조 관련)

1. 고용노동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고용정책실 고용지원정책관	1명 (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2) 통합고용정책국 공정채용 기반과	2명 (4급 1명, 6급 1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3)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 담당관	6명 (4급 1명, 5급 2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나급 1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4) 산업안전보건본부	1명 (고위공무원단 가급 1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5)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 독정책관	1명 (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6)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보건감 독기획과	4명 (4급 1명, 6급 2명, 7급 1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7)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지 원과	7명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8) 산업안전보건본부 건설산재예 방정책과	4명 (4급 1명, 6급 1명, 7급 1 명, 연구관 1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9)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 해감독과	8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2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산업안전감독	1명 (5급 1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2)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운영	3명 (5급 2명, 6급 1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2.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	0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	0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	0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	0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5)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	0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6)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	0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7) 경기지청 건설산재지도과	0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8) 성남지청 건설산재지도과	0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9) 의정부지청 건설산재지도과	0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10) 울산지청 건설산재지도과	0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11) 천안지청 건설산재지도과	0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12) 포항지청 건설산재지도과	0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13) 전주지청 건설산재지도과	0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취업지원 서비스 (지방고용노동관서)	20명 (7급 5명, 8급 8명, 9급 7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2) 근로감독 (지방고용노동관서)	299명 (6급 89명, 7급 150명, 8급 60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3) 산업안전감독 (지방고용노동관서)	114명 (6급 34명, 7급 58명, 8급 22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4) 취업지원 서비스 (지방고용노동관서)	85명 (7급 28명, 8급 28명, 9급 29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5) 근로감독 (지방고용노동관서)	68명 (6급 21명, 7급 32명, 8급 15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6) 산업안전감독 (지방고용노동관서)	33명 (6급 10명, 7급 16명, 8급 7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7)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 추진 (지방고용노동관서)	30명 (6급 3명, 7급 12명, 8급 10명, 9급 5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8) 근로감독 (지방고용노동관서)	21명 (6급 6명, 7급 12명, 8급 3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9) 고용센터 초기상담 (지방고용노동관서)	22명 (7급 14명, 8급 8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10) 산업안전감독 (지방고용노동관서)	106명 (6급 46명, 7급 60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11)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 운영 (지방고용노동관서)	68명 (6급 10명, 7급 27명, 8급 31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대변인) ① · ② (생략)	제2조(대변인)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대변인 밑에 <u>홍보기획팀장 · 디지털소통팀장을 둔다.</u>	③ ----- <u>홍보담당관 · 디지털소통팀장</u> -----.
④ <u>홍보기획팀장 · 디지털소통팀장은</u>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u>홍보담당관은</u>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u>디지털소통팀장</u> ----- --.
⑤ <u>홍보기획팀장은</u>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⑤ <u>홍보담당관</u> ----- -----.
1. ~ 14. (생략)	1. ~ 14. (현행과 같음)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 ⑪ (생략)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⑫ ----- ----- ---.
1. <u>고용노동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 추진</u>	1. <u>고용노동분야 국제협력 정책의 총괄 · 조정 및 종합계획 수립 · 시행</u>
2. <u>고용노동분야에 관한 통상협상 기본계획 및 대응전략의 수립</u>	2. <u>고용노동분야와 관련된 통상, 서비스 등의 협상에 관한</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 협상
중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5. ~ 10. (생략)

<신설>

11. (생략)

⑬ 외국인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 19. (생략)

20. 외국인근로자 송출국 현지 점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외분사무소의 관리·감독

<신설>

⑭ (생략)

⑮ 개발협력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가 간 고용노동교류 및 협력업무의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지원에 관한 사항

2.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다자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WTO) 등 다자간 무역 관련 사항 -----

5. ~ 10. (현행과 같음)

11. 고용노동분야 관련 해외주재 공무원에 대한 업무 지원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⑬ -----

1. ~ 19. (현행과 같음)

20. -----
----- 한국산업인력공단 외
국인력 지원 부서 및 --

21.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따른
국가간 협력에 관한 사항

⑭ (현행과 같음)

⑮ -----

1. 개발도상국과의 국제개발협력 업무에 대한 -----

--

2. -----
----- 사항(단, ILO

3. (생략) 4. <u>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 세계은행(IBR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과 관련된 고용노동분야 협력에 관한 사항</u> <u><신설></u> 5. (생략) 6. <u>외국인근로자 도입에 따른 국가간 협력</u> 7. <u>과거 독일 또는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진출하였던 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u> 8. <u>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G20회의 중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사항</u> 제6조의2(통합고용정책국) ① ~ ⑨ (생략) ⑩ 청년고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u>및 UN 관련 제외)</u> 3. (현행과 같음) 4. <u>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 세계은행(IBRD) 고용노동분야 회의 참석·대응 및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u> 5. <u>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u> 7. (현행 제5호와 같음) <u><삭제></u> 6. --- <u>사우디아라비아</u>----- ----- ----- <u><삭제></u> 제6조의2(통합고용정책국)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 -----.
--	--

1. ~ 13의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4. (생략)

⑪ 청년취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청년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3. 청년의 해외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 전산망 등 인프라 구축·운영에 관한 사

1. ~ 13의2. (현행과 같음)

13의3. 청년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13의4. 청년의 해외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 전산망 등 인프라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3의5. 직업진로지도 및 직업정보제공 등의 개발·확산 및 홍보·교육

13의6. 청년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의 발굴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4. (현행과 같음)

⑪ -----
-----.

1. (현행과 같음)

2. 취약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및 노동시장 진입 촉진에 대한 정책 수립·운영

3. 취약청년 발굴 및 구직단념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u>항</u> <u><신 설></u> <u><신 설></u> 4. · 5. (생 략) 6. (생 략) 7. <u>청년층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u> <u><신 설></u> ⑫ <u>공정채용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 5. (생 략) 6. · 7. 삭 제 8. <u>직업진로지도 및 직업정보제공 등의 개발 · 확산 및 홍보 · 교육</u> 9. <u>청년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의 발굴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u> 10. (생 략) 제14조(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4. <u>청년 일경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 운영</u> 5. <u>청년의 직무탐색, 직무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u> 9. · 10.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6. (현행과 같음) 7. <u>청년 일경험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운영</u> 8. <u>기업 주도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 확산에 관한 사항</u> ⑫ ----- -----. 1. ~ 5.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10. (현행과 같음) 제14조(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	---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운영하는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고, 강릉지청장은 같은 규정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제28조(한시정원) ①·② 삭제

③ (생략)

④ 구직자 취업지원 및 관련 심사·재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에 둔다.

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고용노

-----.

제28조(한시정원)

③ (현행과 같음)

④ -----

--- 2025년 12월 31일 ---

-----.

⑤ -----

2025년 12월 31일-----

동관서에 둔다.

⑥ ~ ⑩ (생략)

⑪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2월 29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에 둔다.

고용노동부령 제9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홍보기획팀장 및 고객지원팀장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홍보기획팀장 및 고객지원팀장이 대변인 및 감사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

-----.

⑥ ~ ⑩ (현행과 같음)

⑪ -----

----- 2026
년 2월 29일-----

-----.

고용노동부령 제9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

-----신설되는 고객지원팀장은-----

② -----존속기간까지 고객지원팀장이 감사관을 -----

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 부터 <u>홍보기획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대변인이, 고객지원팀장 의 보좌하는 사항은 <u>감사담당관</u> 이 각각 분장한다.</u>	-----지난 날 부터 <u>고객지원팀장이</u> ----- ----- <u>감사담당관이 분장한다.</u>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5]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u>629</u>		<u>622</u>	-7	
·			·		·		
·			·		·		
별	정	직 계	<u>5</u>		<u>4</u>	-1	
·			·		·		
·			·		·		
<u>청</u>	<u>년</u>	<u>정</u> <u>책</u> <u>담</u> <u>당</u> (6급 상당)	<u>1</u>		<u><삭 제></u>	-1	
·			·		·		
일	반	직 계	<u>622</u>		<u>616</u>	-6	
·			·		·		
·			·		·		
서	기	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35</u>		<u>36</u>	+1	
·			·		·		
·			·		·		
서	기	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					
정	사	무관 · 공업사무관 · 보					
건	사	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10</u>		<u>9</u>	-1	

행정사무관	<u>118</u>	<u>116</u>	-2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 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 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47</u>	<u>46</u>	-1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보건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u>7</u>	<u>6</u>	-1
·	·	·	
·	·	·	
행정주사보	<u>62</u>	<u>61</u>	-1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직 업상담주사보 ·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36</u>	<u>35</u>	-1
·	·	·	
·	·	·	

[별표 6]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46	639	-7
별정직 계	5	4	-1
청년정책 담당(6급 상당)	1	<삭 제>	-1
일반직 계	639	633	-6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5	36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0	9	-1
행정사무관	138	136	-2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 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 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47</u>	<u>46</u>	-1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보건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u>7</u>	<u>6</u>	-1
·	·	·	
·	·	·	
행정주사보	<u>55</u>	<u>54</u>	-1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직 업상담주사보 ·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37</u>	<u>36</u>	-1
·	·	·	
·	·	·	

[별표 6의3]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고용노동부령 제38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46	639	-7
별정직 계	5	4	-1
청년정책 담당(6급 상당)	1	<삭 제>	-1
일반직 계	639	633	-6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6	37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0	9	-1

행정사무관	<u>138</u>	<u>136</u>	-2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 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 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47</u>	<u>46</u>	-1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보건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u>7</u>	<u>6</u>	-1
·	·	·	
·	·	·	
행정주사보	<u>55</u>	<u>54</u>	-1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직 업상담주사보 ·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37</u>	<u>36</u>	-1
·	·	·	
·	·	·	

[별표 10]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6,746</u>	<u>6,654</u>	-92
일반직 계	<u>6,746</u>	<u>6,654</u>	-92
·	·	·	
·	·	·	
행정주사	<u>967</u>	<u>959</u>	-8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u>165</u>	<u>161</u>	-4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u>241</u>	<u>239</u>	-2
·	·	·	
·	·	·	
행정주사보	<u>1,115</u>	<u>1,104</u>	-11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 사보	<u>440</u>	<u>435</u>	-5
직업상담주사보	<u>36</u>	<u>31</u>	-5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보 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 는 전산주사보	<u>325</u>	<u>321</u>	-4

·	·	·	
·	·	·	
행정서기	<u>399</u>	<u>394</u>	-5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u>682</u>	<u>671</u>	-11
직업상담서기	<u>239</u>	<u>232</u>	-7
·	·	·	
·	·	·	
행정서기보	<u>112</u>	<u>111</u>	-1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u>870</u>	<u>841</u>	-29
·	·	·	
·	·	·	

[별표 11]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6,736</u>	<u>6,644</u>	-92
일반직 계	<u>6,736</u>	<u>6,644</u>	-92
·	·	·	
·	·	·	
행정주사	<u>849</u>	<u>841</u>	-8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u>165</u>	<u>161</u>	-4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u>239</u>	<u>237</u>	-2
·	·	·	
·	·	·	
행정주사보	<u>1,014</u>	<u>1,003</u>	-11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 사보	<u>480</u>	<u>475</u>	-5
직업상담주사보	<u>36</u>	<u>31</u>	-5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보 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 는 전산주사보	<u>328</u>	<u>324</u>	-4

·	·	·	
·	·	·	
행정서기	<u>497</u>	<u>492</u>	-5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u>642</u>	<u>631</u>	-11
직업상담서기	<u>229</u>	<u>222</u>	-7
·	·	·	
·	·	·	
행정서기보	<u>204</u>	<u>203</u>	-1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u>870</u>	<u>841</u>	-29
·	·	·	
·	·	·	

[별표 11의2]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고용노동부령 제38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6,736</u>	<u>6,644</u>	-92
일반직 계	<u>6,736</u>	<u>6,644</u>	-92
·	·	·	
·	·	·	
행정주사	<u>819</u>	<u>811</u>	-8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u>165</u>	<u>161</u>	-4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u>239</u>	<u>237</u>	-2
·	·	·	
·	·	·	
행정주사보	<u>1,014</u>	<u>1,003</u>	-11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 사보	<u>480</u>	<u>475</u>	-5
직업상담주사보	<u>36</u>	<u>31</u>	-5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328</u>	<u>324</u>	-4
·	·	·	
·	·	·	
행정서기	<u>497</u>	<u>492</u>	-5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u>642</u>	<u>631</u>	-11
직업상담서기	<u>229</u>	<u>222</u>	-7
·	·	·	
·	·	·	
행정서기보	<u>204</u>	<u>203</u>	-1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u>870</u>	<u>841</u>	-29
·	·	·	
·	·	·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7의2]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6항 전단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61	60	-1
일반직 계	61	60	-1
5급 이하	60	59	-1